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8호 2024. 2. 21.(수)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27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 1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4-50호

광양 국가산업단지(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4-5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3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4-440호

2024년 수소버스 보급사업 공고 14

광양시 공고 제2024-451호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 24

광양시 공고 제2024-464호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26

광양시 공고 제2024-472호

도로지정공고 31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21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7호

붙임 :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상면 수어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마을별로 주민대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4.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세대별 1명으로 구성된 주민 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마을별 세대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대표는 제2항의 주민총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및 각종 주민지원사업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구성 및 추진된 것으로 본다.



광양 국가산업단지(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개발 발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9조의2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광양시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공원녹지·휴양공간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원조성·관리·이용·방향
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양시 태인동 1630-1번지 일원
- 면 적 : 56,556㎡

5.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 기간

- 시행 방법: 실수요자 개발
-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6.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사항 - 도면 게재 생략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40	배알도 수변공원	수변공원	태인동 1631번지 일원	74,945	

나) 공원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74,945.0	403.37	403.37	100.0%
시 설 면 적(㎡)	25,522.0	403.37	403.37	34.0%
녹 지 면 적(㎡)	49,423.0	-	-	66.0%



다) 실시계획인가 세부시설 조서

시설의 세분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 축 규 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56,556.0		331.38	331.38	
	시 설 부 지	19,672.0		-	-	시설율:34.7%
	기 반 시 설	7,192.0		-	-	
	도 로	3,669.0		-	-	
	광 장	3,523.0		-	-	
	진 입 광 장 3	233.0		-	-	
	중 앙 광 장	1,794.0		-	-	
	연 결 광 장 1	1,496.0		-	-	
	조 경 시 설	395.0	10개소	-	-	
	데 크 산 책 로	346.0		-	-	
	정 자		1개소	-	-	
	막 구 조 파 고 라		9개소	-	-	
	자 전 거 전 망 대	48.0		-	-	
	데 크 계 단 2	-				
	휴 양 시 설	6,135.0	93개소	-	-	
	오 토 캠 핑 장 A	4,181.0		-	-	
	오 토 캠 핑 장 B	-				
	오 토 캠 핑 장 C	-				
	휴 게 소 3	533.0		-	-	
	일 반 캠 핑 장	1,050.0		-	-	
	야 유 회 장	133.0		-	-	
	휴 게 공 간	238		-	-	
	등 의 자		61개소	-	-	
	앉 음 벽		7개소	-	-	
	평 상 A		8개소	-	-	
	그 네 의 자		8개소	-	-	
	선 베 드		9개소	-	-	



시설의 세분		부지면적(㎡)	규모 수량	건 축 규 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유 익 시 설		3,039.0	16개소	-	-	
	공중하강체험시설	264.0	1개소	-	-	·공중하강체험 시설(도착대) ·구조:필로티
	생태놀이터	1,882.0		-	-	
	네트놀이터	471.0		-	-	
	바닥분수	422.0		-	-	
	놀이대A		1개소	-	-	
	놀이대B		1개소	-	-	
	놀이대C		2개소	-	-	
	놀이대D		1개소	-	-	
	놀이대E		1개소	-	-	
	놀이대F		1개소	-	-	
	놀이대G		2개소	-	-	
	놀이대H		1개소	-	-	
	놀이대I		1개소	-	-	
	놀이대J		1개소	-	-	
	놀이대K		1개소	-	-	
	놀이대L		1개소	-	-	
	놀이대M		1개소	-	-	
관 리 시 설		2,911.0	17개소	403.37	403.37	
	주 차 장 1	1,661.0		-	-	
	주 차 장 2	929.0		-	-	
	화 장 실 3	83.0	1개소	65.62	65.62	
	관 리 사 무 소	238.0	1개소	131.04	131.04	
	취 사 장		1개소	-	-	
	볼 라 드		5개소	-	-	
	샤 워 실 1		1개소	47.72	47.72	
	샤 워 실 2		1개소	18.0	18.0	
	샤 워 실 3		1개소	24.0	24.0	
	화 장 실 1		1개소	63.0	63.0	
	화 장 실 2		2개소	36.57	36.57	
	개 수 대 1		2개소	17.42	17.42	
	개 수 대 2		1개소	-	-	
	분 리 수 거 함		2개소	-	-	
녹 지		36,884.0		-	-	녹지율:65.3%



라)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비고
합 계				79,212	74,945			
1	태인	산4-5	임	287	287	김형목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45, 비동 4502호(용호동, 더블유)	
2	〃	산 4	임	5,384	5,384	김형목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145, 비동 4502호(용호동, 더블유)	
3	〃	1136-8	전	724	724	김용진	1602-2	
4	〃	1136-7	전	1,031	1,031	김건호	179	
5		1136-6	전	625	625	김재숙	광양시 태인동 125-65	
6	〃	1136-5	전	268	268	김용진	1602-2	
7	〃	1136-4	전	1,359	1,359	김재숙 외1인	광양시 태인동 125-65	
8	〃	1136-32	전	610	610	김재숙	광양시 태인동 125-65	
9	〃	1136-12	답	472	472	권영인 외1인	진주시 신안동 454-3 평거1차현대아파트 103-1205	
10	〃	1136-10	대	109	109	김재찬	78-1	
11	〃	1136-1	전	908	908	김재숙 외1인	광양시 태인동 125-65	
12	〃	1630-4	제	452	452	국(기획 재정부)		
13	〃	1630-13	제	539	539	국(기획 재정부)		
14	〃	1630-2	제	4,125	3,458.8	국(기획 재정부)		
15	〃	1630-5	제	1,429	409.2	국 (건설부)		
16	〃	1628-32	제	462	462	국 (건설부)		
17	〃	1628-31	제	91	91	국 (건설부)		
18	〃	산4-2	임	266	266	광양시		
19	〃	산4-1	임	595	514	광양시		
20	〃	1633	전	2,076	1,997.9	광양시		
21	〃	1632	답	1,594	1,594	광양시		
22	〃	1633-3	전	832	7.6	동광양시		



번호	소재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비고
23	↗	1632-35	답	143	143	광양시		
24	태인	1632-34	답	323	323	광양시		
25	↗	1632-32	답	1,004	927	광양시		
26	↗	1632-31	답	63	63	광양시		
27	↗	1632-30	답	1,458	1,458	광양시		
28	↗	1632-2	답	3,065	2,988.1	광양시		
29	↗	1632-29	답	804	804	광양시		
30	↗	1632-28	답	182	182	광양시		
31	↗	1632-26	답	459	414	광양시		
32	↗	1632-25	답	1,117	1,117	광양시		
33	↗	1632-23	답	1,945	1,945	광양시		
34	↗	1632-22	답	772	772	광양시		
35	↗	1632-21	답	889	889	광양시		
36	↗	1632-20	답	1,094	1,094	광양시		
37	↗	1632-1	답	172	172	광양시		
38	↗	1632-19	답	1,598	1,598	광양시		
39	↗	1632-18	답	140	140	광양시		
40	↗	1632-17	답	794	794	광양시		
41	↗	1632-16	답	1,391	1,391	광양시		
42	↗	1632-15	답	1,598	1,598	광양시		
43	태인	1632-14	답	826	826	광양시		
44	↗	1632-13	답	1,598	1,598	광양시		
45	↗	1632-12	답	56	56	동광양시		
46	↗	1632-11	답	366	362	동광양시		
47	↗	1632-10	답	197	81	동광양시		



번호	소재지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비고
48	〃	1631	전	1,251	1,251	광양시		
49	〃	1631-6	전	1,252	1,252	광양시		
50	〃	1631-5	전	724	99	동광양시		
51	〃	1631-4	전	328	328	동광양시		
52	〃	1631-3	전	479	479	동광양시		
53	〃	1631-2	전	362	317	광양시		
54	〃	1631-1	전	608	608	광양시		
55	〃	1630-12	잡	5,168	5,168	광양시		
56	〃	1630-1	잡	6,020	6,020	광양시		
57	〃	1629-9	답	696	696	광양시		
58	〃	1629-38	답	31	31	광양시		
59	〃	1629-37	답	1,046	1,046	광양시		
60	〃	1629-18	답	231	231	광양시		
61	〃	1629-17	답	1	1	광양시		
62	태인	1629-16	답	191	191	광양시		
63	〃	1629-15	답	75	75	광양시		
64	〃	1629-14	답	625	625	광양시		
65	〃	1629-13	답	586	586	광양시		
66	〃	1629-12	답	431	431	광양시		
67	〃	1629-11	답	63	63	광양시		
68	〃	1629-10	답	1,740	1,740	광양시		
69	〃	1600-9	답	29	29	광양시		
70	〃	1136-44	답	650	41.4	광양시		
72	〃	1133-13 6	답	272	272	광양시		
73	〃	1133-10 7	답	2	2	광양시		



7. 승인조건 :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추진

승 인 조 건

- 사업시행자는 본 조건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 협의 등이 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시행 및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 실사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시 해당 부서와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피해, 재해 등)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보상)하여야 합니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는 광양시청 산단택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061-797-2937)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4길 28-3 (중동)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2.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7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59-1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4길 28-3 (중동)	20240221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산28, 산19, 산19-1, 산26, 산26-1, 산26-2, 산26-3, 산26-6, 산26-7, 산26-8, 산27, 산28-1, 산28-2, 산28-3, 산28-4, 산28-5, 산28-6, 산29, 산31-8, 415, 421-1, 421-2, 421-3, 422, 422-1, 422-2, 423,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430, 432, 433, 433-1, 434, 435, 519-2, 1067-1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4로 54 (황금동)	20240221	20211215	사업지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716-1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299-11 (금호동)	20240221	20081001	행정동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000-1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60-1	20240221	20100414	은장도전시관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0, 산38-38, 산38-46, 산38-47, 산38-52, 산38-53, 산38-55, 산49, 산63-4, 산63-5, 산67-4, 산67-11, 산67-22, 401, 401-1, 401-2, 402, 402-1, 403, 404, 404-1, 404-2, 405, 406, 407, 548-1, 551, 551-1, 552-1, 552-2, 1067, 1067-1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1로 66 (황금동)	20240221	20211215	사업지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111-6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1길 109-13	20240221	20081001	매천 황현 사당 및 생가가 있는 곳에서 작명, 일련번호식 부여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486, 487, 487-2, 487-3, 488, 488-1, 488-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492	20240221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024년 수소버스 보급사업 공고

2024년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버스 보급사업을 공고 · 안내합니다.

2024. 2. 21.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4. 2. 22.(목) ~ 12. 20.(금)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보급대수: 수소버스 3대(고상 3대) ※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 예정
- 지원대수: 법인 당 최대 3대
- 지원금액: (고상) 370백만원/대(국 260 도 33 시 77)
- 보조금 지원 차량

구분	제작사	차종명	충전주행거리 (km)	연료소비효율 (km/kg)
승합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35	26.08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광양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 확인
- ※ 사전 협의 법인 우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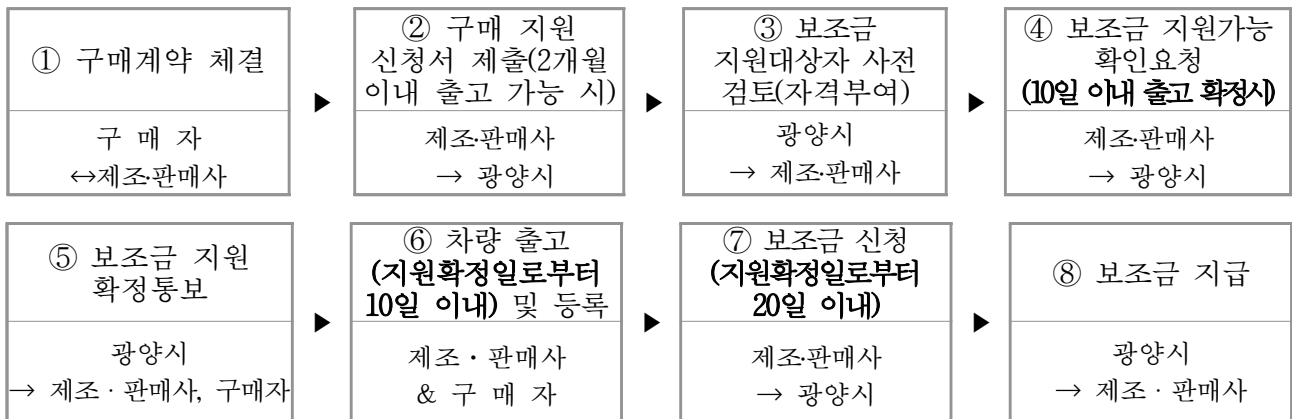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차 제조 · 판매사가 자사차량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 · 연구 목적으로 구매시



○ 자격조건(필수)

-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 최초 차량등록 사용본거지 및 주소는 **광양시**로 한정

3. 보조금 집행 절차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에서 진행

4. 구매지원 신청

○ 신청방법

(구매희망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제조·판매사)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https://ev.or.kr/>)

※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 사용하므로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음.

제출서류(구매지원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1] -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차량구매계약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차량구매계약서 제외)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5.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선정방법: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신청 기간: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출고일은 세금계산서 날짜로 함, 기간내 차량 출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증빙서류 제출)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취소됨

제출서류(보조금 지급 신청)
-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3]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사본) -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본은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조·판매사가 광양시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원본 서류 일괄 제출(방문/우편) <u>(주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4층 신산업과 수소산업팀 수소차 담당자)</u>

- 보조금 지급방법 : 차량등록 완료 후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6. 의무준수(의무운행)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광양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광양시 내 주소를 둔 법인에 한하여 매매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광양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해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표2>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표1,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운행기간별 회수요율(%) >

수소전기차 운행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표2,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수출 목적 말소 외](%) >

수소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7. 유의사항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구매신청서 접수 기간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 후 신규로 접수해야 합니다.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능
- 수소차 신청자가 신청접수 한 날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지원가능 확인 요청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출고 등록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가 취소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차량등록증의 최초 사용본거지는 광양시 관내 주소로 한정합니다.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광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등록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광양시 외 타 지자체 주민등록 가족의 공동명의는 불가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가족)외 법인과의 공동명의는 불가



- 구매신청서 등 관련신청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법인 등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계약 취소 여부를 광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 시 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연금이나 기초수급 담당자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사용본거지가 광양 외의 주소로 차량 등록, 의무기간 내 전기차 1대 이상 구매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 후 수소전기자동차충전소 준공지연 및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광양시 신산업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8. 광양시 수소차 판매소 현황

보급업체명	자동차 판매점
현 대(3개소)	중마대리점 (중동, ☎ 794-9800, 팩스 794-6123) 동광양지점 (중동, ☎ 793-4720, 팩스 793-1188) 광양지점 (광양읍, ☎ 762-8865, 팩스 762-6825)

9. 수소충전소 현황(전남)

순번	충전소명	주 소	연락처	비고
1	하이넷 광양성황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955-4(성황동)	061-794-8005	
2	효성하이드로젠(주) 광양초남 액화수소충전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763-5	-	6월 준공예정
3	하이넷 여수SPG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603(중흥동)	070-5014-4446	
4	하이넷 여수둔덕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17(둔덕동)	061-652-2121	
5	코하이젠 여수주삼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30(주삼동)	061-686-3155	
6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56-6	061-393-0257	
7	하이넷 함평천지휴게소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741-1	061-324-4136	

※ 전국 수소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및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 앱) 등에서 제공

붙임 [서식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2]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3]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출고 예정일자	필수입력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영업담당자	(소속)	영업소/대리점 (성명)		(연락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소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개인)주민등록초본, (법인·기관)사업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택시) 택시면허 사업자등록증 (우선순위) 해당 증빙서류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광양시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승용 10년 또는 16만Km, 버스/트럭 5년 또는 50만km)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서식 3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명		법인등록번호	
	판매점명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신청액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사)통장사본, (제작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윤동주 · 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윤동주 · 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윤동주 · 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1번지 외 3필지
-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3-1번지 외 3필지(400㎡), 물건 별첨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4. 2. 19. ~ 2024. 3. 4.
- 열 랐 장 소 :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61-797-2227)
 - ※ 토지 · 물건 조서 : 별첨
- 이의신청장소 :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이의신청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 · 물건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 의 조 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 등의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시기

○ 2024. 4 ~ 5월 중(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공고→토지 등의 감정평가→손실보상 협의→보상

○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 1)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 2)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3) 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상세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61-797-22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측량이나 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번지, 394-1번지, 397-1번지, 396-4번지
- 나. 사업명칭 :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 다.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 라.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현장조사 토지 및 지장물

- 가. 토지 :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번지, 394-1번지, 397-1번지, 396-4번지
(편입토지조서 별첨)
- 나. 물건 : 위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 등 일체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별첨

3. 현장조사 연기 신청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기간 : 2024. 2. 20. ~ 2023. 2. 26.
- 나. 현장조사 : 2024. 2. 27. ~ 사업종료시
- 다. 조사장소 :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061-797-2732)
- 라. 조사원의 성명: 붙임 허가증 참조



- 마. 조사연기 및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현장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붙임 이의신청서, 조사연기신청서)으로 열람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바. 조치 : 1)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내용 통보
2)조사연기 신청자에게는 일정 개별협의
- 사.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5. 측량 조사 시 손실보상방법 및 절차

- 1)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 2)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수 없음
-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 4)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음

6. 장애물제거 등 손실보상방법 및 절차

- 1)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애물 제거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애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애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애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기타사항

가. 현장조사를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061-797-2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의 명칭 :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연번	시군구	리동	지 번		지 목	당 초 면 적 (㎡)	편 입 면 적 (㎡)	공유 지분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 고
			당 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658	1060								
1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	483-1	대	750	750	1	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2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94-1	394-1	대	221	90	1	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3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97-1	397-1	답	2667	200	1/2	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51	오봉심				
								1/2	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51	박병천				
4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96-4	396-4	답	20	20	1	답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물 건 조 서

사업의 명칭 :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

연번	시군구	리동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및 내용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	건축물	시멘트벽돌	111.2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마 을신촌부락				
2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83-1	건축물	시멘트벽돌	9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마 을신촌부락				
3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83-1	건축물	경량철골	58.5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마 을신촌부락				
4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83-1	건축물	경량철골	21.6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	광양시장				
5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394-1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48.4	전라남도 광양시봉강면 신룡리 461	신촌마을영농회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축) 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4. 2. 20.

광 양 시 장

-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 3. 공고기간: 2024. 2.20. ~ 2024. 3. 4.(14일간)
- 4. 도로지정 공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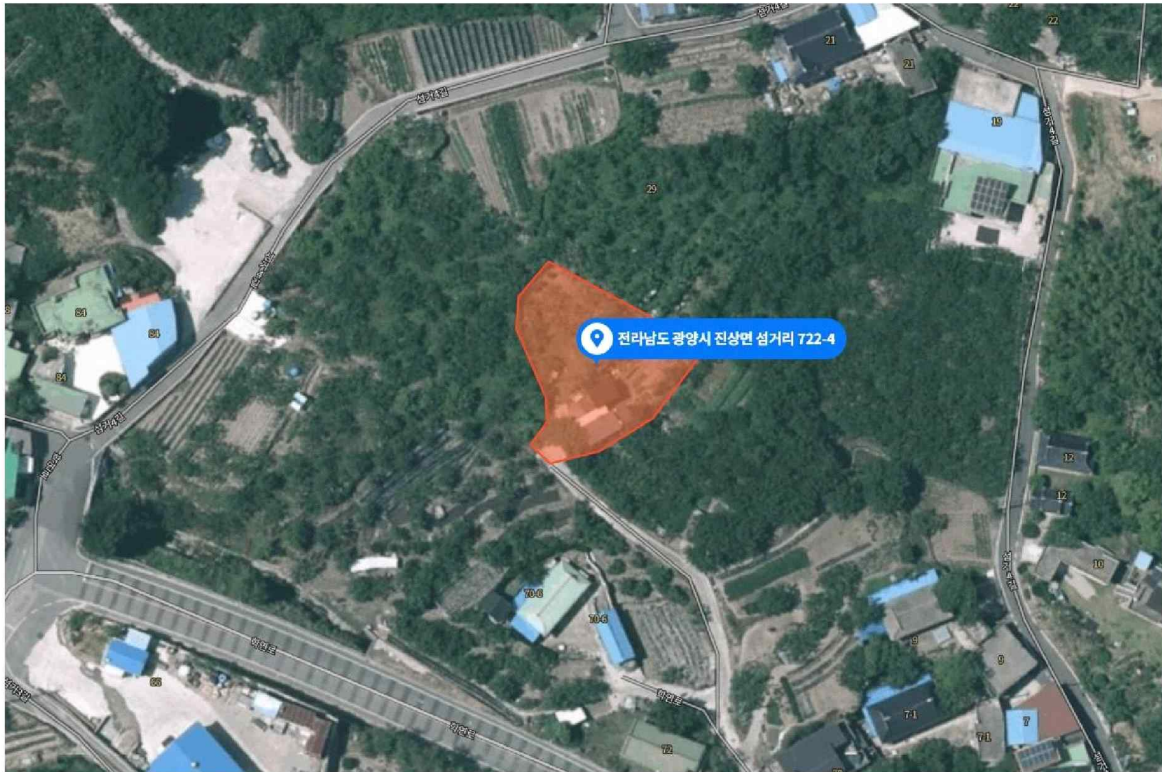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722-4번지 외1필지(72 2-2번지)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722-4번지 외3필지(72 2-3번지,60 1번지,602 번지)	69m	4m	130㎡	류○상 박○선 ○숙 하○정 하○정 하○혜 하○경 하○근	동의

-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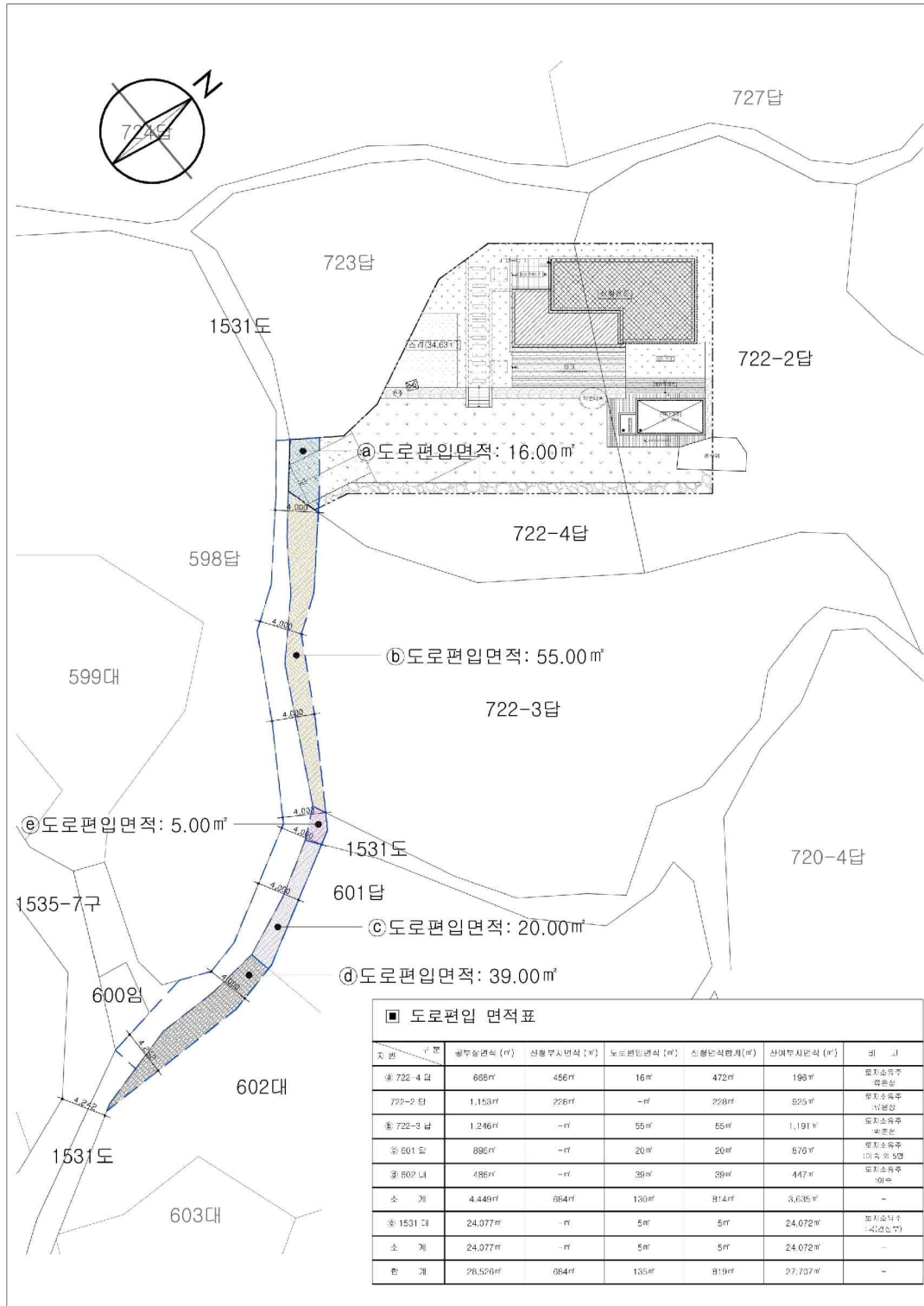
위치도

축 척 <NONE>



현 황 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현황도

축척 <NONE>

